

협동사회경제연구원 규정

제정 2008. 07. 1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원은 상지대학교 부설 협동사회경제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원은 상지대학교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교류협약에 따라 자조·협동·연대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본 연구원은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지역사회 및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·공동체 등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조사
2. 지역사회 및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·공동체 관련 정책의 평가 및 개발
3. 관련 분야의 교육 및 연수
4. 지역사회의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관련 사업
5. 공개강연,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
6. 지역사회 및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·공동체 관련 출판사업
7. 타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연구교류
8. 외부 위탁연구의 수행
9. 기타 연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

제2장 조직

제5조(연구원장) ① 연구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연구원장은 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임면,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및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
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원장을 포함하여 7~15명으로 하며, 전임교원은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연구원 등)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·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고문)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(자문위원)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, 타교 교원 또는 본 연구소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(연구보조원 등) 연구원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,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장 회의

제11조(회의) ① 연구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제4장 재정

제12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
2. 교내 연구비
3. 정부·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
4. 기타 수입

제13조(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) ①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4조(규정 개정 및 해산) ① 본 연구원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지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교수·연구원 임용규정 및 부설 연구소(원)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(지침 등) 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814호, 2008.7.16)

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